



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개정 목적

1.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은 교육기관의 책임

-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, 기관실습이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함
- 교육기관은 기관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「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」과 「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, 이를 위해 학교 내 학칙 마련해야 함

2. 실습기관에서 부정·허위실습 지도 시 이에 대한 책임

- 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이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과 「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」의 규정에 따라 실습지도를 하여야 함.
- 부정·허위 실습지도가 확인될 경우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및 실습기관 선정 취소 (실습생도 자격이 발급이 안되거나 발급된 자격취소가 이뤄짐)





주요 개정 내용 (개인)

1. [개인] 자격증 신청 시 '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' 미제출

-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'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' 미제출
※ 2025년 2월 6일부터 적용
- 기존 제출해야 할 서류 (자격증 신청서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)는 기존 절차에 따라 제출

2. [개인] 부정·허위 실습 진행 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불가

- 부정·허위 실습에 참여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3 제1항1호에 따라 자격취소

※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활동을 통해 최종 교육기관에서 성적을 부여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습에 참여해야 함





주요 개정 내용 (교육기관)

1. [교육기관]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과정 법 기준 준수

- 실습세미나 지도교수는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해야 함
- 실습세미나는 1회 2시간, 15회 이상 실시 (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방식 실습세미나 총 3회 이상, 주1회를 초과할 수 없음)
- 실습세미나의 참여 학생 수는 30명 이내

2. [교육기관]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

- 기관실습의 실시, 학기외 기관실습 운영 근거,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의 지정, 교과목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관련 사항을 대학생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학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
- 실습지도와 관련한 서류는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함
 -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, 실습일지, 실습생출근부, 실습계약서, 실습평가서 기타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작성한 실습생 개별 서류 등





주요 개정 내용 (실습기관)

1. [실습지도자] 사전 선정된 지도자에 의한 실습지도

- 실습지도자 추가 및 변경 시 사전 변경신청과 승인을 받은 실습지도자에 의한 실습지도 진행
-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 시 부정실습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과 함께 실습생의 자격증 미발급 및 실습지도자의 자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

2. [실습기관] 기관실습의 목적에 따른 실습지도

-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며,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생이므로 기관 고유목적 사업과 교육에 맞춰 실습 진행 (허드렛일 및 잡무 금지)

3. [실습기관] 실습 진행 서류 보관 관리의 책임

- 기관실습 진행에 따른 서류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함

※ 부정·허위 실습 진행이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협회에서 실습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





그 외 자세한 내용은

'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- 열린광장 - 자료실'에서
2025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게시글 및 첨부파일을
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s://www.welfare.net/lic>

